

##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안)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19 |
|----------|----|

발의년월일 : 1998. 10. 16.

발 의 자 : 광희관의원외4인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### 2.. 주요 개정내용

#### 가. 구정질문 및 답변

- 기 간 : '98. 11. 3 ~ '98. 11. 4 (2일간)
- 장 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구청장, 부구청장, 행정관리국장, 보건소장, 재무국장,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- 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
- 다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